

예 산 총 칙

2024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48,973,064	19,469,192
일반회계		590,064,557	17,701,937
특별회계		58,908,507	1,767,255
	공기업특별회계	47,962,227	1,438,867
	상수도공기업	23,460,775	703,823
	하수도공기업	24,501,452	735,044
	기타특별회계	10,946,280	328,388
	의료급여기금운영	793,309	23,799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690,552	20,717
	농공지구조성사업	5,419,560	162,587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500	75
	수질개선	1,996,503	59,895
	주택사업	2,043,856	61,316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885,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포함)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43,800,000 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